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40호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강릉시의회의장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23. 4. 27.)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책무(안 제1조, 제2조)
- 나. 적용범위(안 제3조)
- 다. 경비의 지원, 지도 및 감독(안 제4조, 제5조)
- 라. 지원중단(안 제6조)
- 마. 포상(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033-640-4033)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
- 이메일: jhyoon93@korea.kr
- 팩 스: 033-640-4070

- 붙임 1.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1]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자율방범대등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자율방범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강릉시의 지원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4조에 따라 강릉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자율방범대와 법 제12조에 따라 서장에게 설립

신고한 자율방범연합대에 적용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2. 자율방범대등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3.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자율방범대등의 규모와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서장에게 법 제9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3.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4.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과 그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등과 그 대원에 대해서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붙임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법규명: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개정안 내용	의 건	비 고